

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능정보화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629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5. 2. 4.
제 출 자 : 정보통신국장

1. 제안이유

- 가.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6조(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) 및 제7조(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)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
 - 종합계획은 정부가, 실행계획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가 수립
- 나. 「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」에 따라 운영 필요성이 낮은 정보화추진위원회를 폐지하여 정보화분야에 대한 책임행정을 강화

2. 주요내용

- 가.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에 따라 종합계획 수립 조항 삭제 및 관련 내용 정비(안 제4조, 제5조, 제8조)
- 나. 정보화추진위원회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(안 제6조, 제7조)

3. 조례안 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6조, 제7조 (※ 붙임)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기타
 - (1)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 - (2) 입법예고(2024. 12. 6. ~ 12. 26.) 결과 : 의견 없음
 - 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 - (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(5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
(6) 부서합의 : 해당사항 없음

(7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를 삭제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이 조례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”를 “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연계하여”로 한다.

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.

제8조제3항제2호 중 “종합계획 및 실행계획과의”를 “실행계획과의”로 한다.

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8조”를 “제9조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촉된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종합계획의 수립)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달성군의 여건과 환경을 감안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(이하 “종합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할 수 있다.</p> <p>② 군수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정부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대구광역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지능정보화 정책의 기본방향 2.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.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.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·활용 5.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.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.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. 정보격차해소 및 인터넷중독 예방·해소 9.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. 그 밖에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<p>④ 삭제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삭 제></p>

제5조(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군수는 정부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이 조례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(이하 “실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6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지능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군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보화추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·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,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제5조(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-----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-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1.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이
추천하는 의원

2. 정보화업무를 총괄하는 국장

3. 지능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
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
수가 위촉하는 사람

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
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
는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.

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2
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
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
의 잔임기간으로 하며, 공무원인
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
한다.

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
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
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
다. 다만,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
사이버 또는 서면에 의한 회의로
대체할 수 있다.

⑦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
산의 범위에서 「대구광역시 달성
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
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·여
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7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.

1.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
2. 계획의 중요 사항 변경 및 지능정보화 정책 사업의 조정
3.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·점검
4. 그 밖에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8조(지능정보화책임관)

- ① ~ ② (생략)
-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.
 1. (생략)
 2. 정책·계획 등의 수립·추진 시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과의 연계·조정
 3. ~ 8. (생략)

제9조의2(지능정보화 추진 지원)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, 보조금 지원 등 필요한 행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~ 2. (생략)
- ② (생략)

<삭 제>

제8조(지능정보화책임관)

- ① ~ ② (현행과 같음)
- ③ -----
-----.
1. (현행과 같음)
2. -----
실행계획과의 -----

3. ~ 8. (현행과 같음)

제9조의2(지능정보화 추진 지원) ① ----- 제9조-----

- -----

-----.
1. ~ 2. (현행과 같음)
 - ② (현행과 같음)

관 계 법 령

□ 지능정보화 기본법

제6조(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) ①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효율적·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(이하 “종합계획”이라 한다)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종합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(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며, 「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(이하 “전략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수립·확정한다.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④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
2. 공공·민간·지역 등 분야별 지능정보화
3. 지능정보기술의 고도화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촉진과 관련 과학기술 발전 지원
4. 전 산업의 지능정보화 추진, 지능정보기술 관련 산업의 육성, 규제개선 및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등을 통한 신산업·신서비스 창업생태계 조성
5. 정보의 공동활용·표준화 및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
6. 지능정보사회 관련 법·제도 개선
7.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·홍보·인력양성 및 국제협력
8.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
9. 정보보호, 정보격차 해소, 제51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 역기능 해소, 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
10.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·운용 및 인력확보 방안
11. 그 밖에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할 때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
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종합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 실적을 점검·분석하여 그 결과를 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7조(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(이하 “실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

야 한다.

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다음 해의 실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동으로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 실적 및 실행계획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실행계획을 점검·분석하고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점검·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그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.

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실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.

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기관등이 추진하는 지능정보화 사업의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. 다만, 「전자정부법」 제67조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은 제외한다.

⑦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